

제 361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1973. 4. 12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444·6090

시보

차례

서울특별시
공보실장
1973. 4.
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○ 규 칙

제 1297 호 서울특별시 외구사무분장 규칙중

개정규칙 3

○ 고 시

제 44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및지적승인변경 5

제 45 호 서울특별시 철거민이주정착지조정사업 시설일

부와 지적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 6

○ 공 고

제 68 호 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11

○ 사 령

..... 11

- 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- 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 의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3년 4월 10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297 호

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
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 규칙중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 조 (세무제 2 과) ①세무제 2 과에
징수제, 간세제와 주민세제를 두고
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세무제 2 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
음 각호와 같다.

1. 징 수 제

가. 과소관의 시세의 징수결정
및 구의세입금 징수보고

나. 과소관시세의 가산금조정 및
독촉결의

다. 과소관 세입금의 출납 및
세의수입금 징수

(토목과와 청소과 세외수입
제외)

라. 과소관 시세징수부의 소인관리
집계 및 과정보고

마. 과소관 시세의 과오납금 결의
와 환불, 충당

바. 과소관 시세에 관한 공과금
교부청구 및 징수촉탁의 총괄

사. 과소관 시세의 납세증명등 시
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

아. 과소관 과년도 체납시세의 징
수, 체납처분, 징수촉탁, 불납결손
처분

자. 과소관 시세체납에 대한 압류
재산의 공매환가

차.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

카. 과소관 납기후 현금징수 원부
의 수불 및 과소관

재무비에산의 집행과 장비 관리

타. 국세부과세등 폐지세목의 체납액
징수

파. 시세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
민원처리와 징수유예

하. 시세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
된 공부 및 관련문서의 정리
보존

저. 과년도 체납시세에 관한 조세
법칙사건의 조사처리

너. 과소관 시세 체납으로 인한

영업정지 및 허가취소

다.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간 세 계

가. 유통음식세, 도축세, 마권세, 면허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, 징수

나. 소관 현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체납처분, 징수촉탁, 불납결손처리

다. 소관 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

라. 소관 세목에 관한 부과취소 변경, 감면에 관한 사항

마. 소관 세목에 관한 공부 및 관련 장표의 정비보존

바. 소관 세목에 관한 집계 및 세표 작성보고

사. 소관 세목에 관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리

3. 주 민 세 계

가. 주민세의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징수

나. 주민세에 관한 신고와 이의 신청처리

다. 주민세의 부과취소, 변경 감면에 관한 사항

라. 주민세 체납세에 대한 체납처분 및 불납결손과 징수촉탁

마. 주민세에 대한 세표 및 관련 계표의 작성

바. 소관세목에 대한 현년도 조세 범칙사건조사처리

제 13 조 제 1 항 중 "정리계"를 "주민세계"로 하고 동조 제 3 항 단서 중 "정리계"를 "주민세계"로 하며 동조 동항중 제 3 호와 제 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세무제 1 계

가. 시세의 징수결정과 세입징수 보고

나. 시세의 가산금 조정 및 독촉결의

다. 시세 및 세외수입금의 출납

라. 시세 징수부의 소인, 관리, 집계 및 과정보고

마. 시세의 과오납금 결의와 환불, 증당

바. 시세에 관한 공과금 교부 청구에 대한 협의 및 징수

축탁, 총괄

사. 시세의 납세증명등 시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

아. 과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체납 처분과 불납 결손처분

자. 시세에 관한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

차.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

카. 현금 징수 원부의 수불과 재무비의 집행 및 장비관리

타. 세무관계 사무중 세무제 2 계, 세무제 3 계 및 주민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6. 주민세계

가. 주민세의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징수

나. 주민세에 관한 신고와 이의 신청처리

다. 주민세의 부과취소와 감액 및 면세

라. 주민세체납 시세에 대한 체납 처분 및 불납결손과 징수축탁

마. 주민세에 대한 세표 및 관련 계획표의 작성

바. 소관세목에 대한 현년도 조세

법칙사전 조사처리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4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일부 및 지적승인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 호(69.1.18) 로 시설 결정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 및 지적승인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(73.4.4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3. 4. 10.

서울특별시장

가. 노선변경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가 존	소로	3		6 ^M	70 ^M	중1-9호	석관국민교	폐 지
"	"	3		6	68	"	"	"
신 설	"	3		6	71	"	"	신 설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45 호

서울특별시철거민이주정착지
조성사업시설일부와
지적승인 및 실시계획변경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3 호 (73.2.8)

로 실시계획인가된 서대문구신사동
산 93 번지의 1 필지 일단의 주택지
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
한 시설 및 지적승인 변경과 동법
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

변경인가를 건설부고시 제 123 호

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
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보입니다.

1973. 4. 10

서울특별시장

가. 가로망 변경조사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1	소1-1	10m	102(75)	소3-2	대3-32	
변경	"	"	"	"	100(75)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3	소3-1	6m	42m	산93	소3-2	
변경	"	4	4-48	4m	53	"	소4-35	로포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3	3-2	6m	418(266)	소3-1	대3-32	
변경	"	3	"	"	320(266)	산88-2	산93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3	3-3	"	262(60)	산93	대3-32	
변경	"	"	"	"	262(60)	"	"	위치변경
기정	"	"	3-4	"	122	소3-2	산51-1	
변경	"	"	"	"	122	"	"	위치변경
기정	"	"	3-5	"	227(45)	산93	소1-1	
변경	"	"	"	"	227(45)	"	"	위치변경
기정	"	"	소4-1	4m	94	소3-2	산90	
변경	"	"	"	"	72	소4-35	소4-37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소1-2	"	78	소4-36	209전	
변경	"	"	"	"	72	소4-35	소4-37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3	4m	36	산-93	소3-3	
변경	"	"	"	"	38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4	"	36	산90	소3-3	
변경	"	"	"	"	30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4	4-5	4m	27m	산 90	소 3-3	
변경	"	"	"	"	27	"	"	위치 변경
기정	"	"	4-6	"	48	209 전	"	
변경	"	"	"	"	48	"	"	위치 변경
기정	"	"	4-7	"	48	234 전	"	
변경	"	"	"	"	45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8	"	36	234 전	"	
변경	"	"	"	"	"	"	"	위치 변경
기정	"	"	4-9	"	38	234 전	"	
변경	"	"	"	"	41	"	"	연장 확대및위치변경
기정	"	"	4-10	"	25	234 전	"	
변경	"	"	"	"	20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11	"	35	223-7 전	"	
변경	"	"	"	"	23	"	소 3-4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12	"	41	산 93	"	
변경	"	"	"	"	36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13	"	70	"	"	
변경	"	"	"	"	70	소 3-2	"	위치 변경
기정	"	"	4-14	"	49	산 51-2	"	
변경	"	"	"	"	44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15	"	67	소 3-3	"	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총 점	비 고
변 경	소로	4	4-15	4 m	67	소 3 - 3	소 3 - 4	위 치 변 경
기 정	"	"	4-16	"	44	"	237 전	
변 경	"	"	"	"	41.4	"	"	위 치 변 경
기 정	"	"	4-17	"	54	"	소 1 - 1	
변 경	"	"	"	"	55	"	"	연장확대및위치변경
기 정	"	"	4-18	"	49	"	"	
변 경	"	"	"	"	50	"	"	"
기 정	"	"	4-19	"	46	"	"	
변 경	"	"	"	"	54	"	"	"
기 정	"	"	4-20	"	71	소 3 - 4	소 3 - 5	
변 경	"	"	"	"	71	"	"	위 치 변 경
기 정	"	"	4-21	"	63	소 1 - 1	"	
변 경	"	"	"	"	63	"	"	"
기 정	"	"	4-22	"	48	236 전	"	
변 경	"	"	"	"	48	"	"	"
기 정	"	"	4-23	"	69	소 3 - 5	소 2 - 1	
변 경	"	"	"	"	45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 정	"	"	4-24	"	43	"	"	
변 경	"	"	"	"	46	"	"	연장확대및위치변경
기 정	"	"	4-25	"	45	"	"	
변 경	"	"	"	"	46	"	"	"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부원	연장	기 지	총 점	비 고
기정	소로	4	4-26	4	37	소 3 - 5	238당	
변경	"	"	"	"	39	"	"	위 치 변경
기정	"	"	4-27	"	28	"	"	
변경	"	"	"	"	28	"	"	"
기정	"	"	4-28	"	35	"	239-1전	
변경	"	"	"	"	35	"	"	"
기정	"	"	4-29	"	45	"	소 2 - 1	
변경	"	"	"	"	42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30	"	31	"	산 53	
변경	"	"	"	"	31	"	"	위 치 및 변경
기정	"	"	4-35	"	74	소 3 - 2	산 76	
변경	"	"	"	"	63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36	"	23	"	산 87 일	
변경	"	"	"	"	20	소 4 - 35	산 51-1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37	"		산 93 일	소 3 - 2	
변경	"	"	"	"	62	"	"	연장확대 및위치변경
기정	"	"	4-38	"	67	소 3 - 2	산 88-2일	
변경	"	"	"	"	92	"	"	연장확대 및위치변경
기정	"	"	4-39	"	46	소 4 - 19	235-4전	
변경	"	"	"	"	38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기정	"	"	4-40	"	49	소 3 - 5	소 3 - 5	
변경	"	"	"	"	120	"	"	연장확대 및위치변경
기정	"	"	4-41	"	82	소 4 - 22	236-1대	
변경	"	"	"	"	48	"	"	연장축소및위치변경

공 고

사 령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8 호

환지에정지 변경 지정 공고

1. 영동제 2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법제 5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 법제 56 조와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및 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공고한다.

2. 환지에정지 변경조서 및 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2 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.

1973. 4. 10.

서울특별시장

◎ 1973. 4. 9

연 료 과 지방화공기원보 장 흥 숙
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 1 항
3 호규정에 의거 휴직을
명함.

방 호 과 조 건 부 배 광 조
지방통신기사보 지방통신기사보에 임함.
2 호봉을 급함.
방호과근무를 명함.

주 택 건 설 과 조 건 부 백 승 환
지방건축기원보 지방건축기원보에 임함.
2 호봉을 급함
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.

방 호 과 조 건 부 권 영 은
지방통신기원보 지방통신기원보에 임함.
2 호봉을 급함.
방호과근무를 명함.

농 정 과 조 건 부 이 명 회
지방수의원보 지방수의원보에 임함.
2 호봉을 급함.
농정과근무를 명함.

<p>주택건설과 조 건 부 지방건축기사보 박 수 하</p> <p>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.</p> <p>2 호봉을 급함.</p> <p>주택건설과근무를 명함.</p> <p>영 등 포 구 조 건 부 지방건축기사보 변 한 섭</p> <p>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.</p> <p>2 호봉을 급함.</p> <p>영등포구근무를 명함.</p> <p>농 정 과 조 건 부 지방수의원보 이 상 휘</p> <p>지방수의원보에 임함</p>	<p>2 호봉을 급함.</p> <p>농정과근무를 명함.</p> <p>◎ 1973. 4.10.</p> <p>아 동 병 원 지방간호기원보 민 숙 자</p> <p>녹지과 (어린이대공원관리 요원) 파견근무를 명함.</p> <p>청 소 국 장 부 이 사 관 김 성 권</p> <p>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</p> <p>1973 년 4 월 4 일</p> <p>대 통 령</p>
<p>서 울 특 별 시 장</p>	